

第144回國會 第5共和國에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10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0月14日(金)

場 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위한證人採擇및證言聽取會議에관한件

審査된案件

1.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위한證人採擇및證言聽取會議에관한件 1面

(15時20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오래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정보다 1時間15분이 늦어서 이제 겨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次 特別委員會를 開會 하겠습니다.

먼저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趙南樂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基澤 새로 오신 李致浩委員 나와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시고...

趙庚穆委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庚穆委員 趙庚穆委員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黃炳禹委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炳禹委員 黃炳禹委員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새로 오신 委員들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1.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 위한證人採擇및證言聽取會議에관한件

(15時23分)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위한證人採擇및證言聽取會議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本 特委의 全體會議가 開會될 때까지의 상황을 여러 委員들께 잠깐 보고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계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지난 10月5日 第9次 當 特委 全體會議에서는 日海財團의 資金造成關係非理調查를

위한 日海財團 文書檢證班의 金東周檢證班長으로부터 檢證活動에 대한 中間報告가 있었으며 文書檢證班에서는 日海財團關係者 9名을 證人으로 채택하고 10月6日 證言을 聽取키로 하였다는 보고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證人不出席으로 지난 10月6日의 文書檢證班 證言聽取는 流會되고 文書檢證班에서는 다시 10月14日 즉 오늘 10時에 證人出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證人出席要求書를 재차 발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月10日 民主正義黨 金重權委員外 12人의 當 特委所屬委員으로부터 國會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해서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의件을 다루기 위한 當 特委 全體會議를 10月13日 下午 2時에 열어달라는 書面要求가 있었습니다.

이에 委員長은 지난 10月11日 아침 7時30분에 4黨幹事會議를 열고 民正黨에서 當 特委 全體會議를 開會要求한 문제와 文書檢證班에서 채택한 證人問題에 관하여 그 대책을 協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月13日 9時에 다시 4黨幹事會議를 열어서 이 문제를 계속 協議했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合意事項을 여러 委員들에게 報告兼 말씀드리겠습니다.

當 特委의 日海財團의 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 위하여 國政監查가 끝나는 그 몇日후인 10月27日과 10月31日에 證言聽取를 위한 全體會議를 열기로 하고 證人採擇에 관하여는 檢證班에서 채택한바 있는 9人의 日海財團 關係者外에 各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追加證人

을 全體會議에서 證人으로 採擇하기로 合意를 봤습니다.

그리고 日海財團文書檢證班의 金融機關에 대한 檢證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계속 檢證活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全體會議에서 決定하여야 할 事項은 證言을 聽取하는 날짜를 정하는 문제를 우리 幹事會議에서는 27日과 31日로 했읍니다마는 全體會議가 決議를 해주셔야 되고 동시에 證人을 採擇하는 문제를 決定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證言聽取會議方式決定 기타 證言聽取會議의 場所決定問題 등이 오늘 이 全體會議에서 議決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幹事會議에서 이미 合意가 이루어진 當 特委 全體會議에서 證言을 聽取할 證言聽取會議日時를 10月27日 木曜日 10月31日 月曜日 兩日間 각각 10時로 이렇게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사항을 여러 委員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決議한 것으로 確定짓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金瑋鎬委員 政黨代表演說이 몇日 몇日입니까?

○委員長 李基澤 그것은 25·26日입니다. 끝나고 바로 그 日字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자! 日字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合意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異議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決定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에 當 特委 全體會議에서 採擇할 證人을 決定하고자 합니다.

幹事會議에서는 이미 報告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日海財團文書檢證班에서 證人으로 採擇한 關係者 아홉사람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金甲基 林正煥 朴魯沈 임종보 金麟培 金基桓 趙成熙 安賢泰 張世東 그리고 各黨에서 추가하여 證人採擇이 필요하다고 하여 幹事會議에서 합의한 金圭錫 李鍾元 任昭赫 崔淳達 鄭周永 梁正模 李垓鎔 崔淳永 柳纘佑 張致赫 現 外務部次官인 申東元등 이렇게 20名을 證人으로 선정키로 合意를 보았읍니다.

이 이외에 더 추가를 시켜야 될 證人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이미 新聞紙上에 報道가 됐기 때문에 委員長으로서 한말씀만 添加報告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日海財團非理關係調査에는 全斗煥 前大統領이 가

장 調査의 核心人物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本會議가 늦어진 것도 그 부분에 대한 與野의 論難이 많이 있었읍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野團3黨은 全斗煥 前大統領을 이번 기회에 出席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與黨側 주장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5共特委에서 調査해야 될 그 많은 案件 가운데 全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두件이 아니지 않느냐 관련이 있다 해서 事件 事案마다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日海財團에 局限해서 우리가 出席要求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 또 이해되기도 어렵지 않느냐 日海財團을 우리가 27日 31日 調査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事件과 함께 연계해서 장차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었읍니다.

그래서 野團3黨에서도 사실 小會議室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委員 몇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상황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양해가 된다면 次期에도 41次 調査對象 44件을 調査해 가면서 아마 全세가 이 特委에 나와야 될 事件이 한 두件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간 중간 몇가지 事件을 모아가지고 出席시키는 方案도 있습니다.

우리 特委가 예를 들어서 이 한 事件만 日海財團 한 事件만 하고 解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면 特委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暴露을 수 없지만 저는 이번 1次에 民主正義黨의 주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小會議室에 계셨던 분들은 대강 설명을 들었고 안 계셨던 野黨委員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쯤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분위기와 오고가는 대화 내용만 委員長으로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읍니다.

金東周委員 얘기할 것 있으면 하세요.

○金東周委員 金東周委員입니다. 방금 委員長 설명은 정확했읍니다.

與野間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5共特委는 全國民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日海財團의 出捐者가 바로 이 全斗煥씨입니다. 또 우리가 調査를 하는데 있어서 前職 大統領에 대한 禮遇도 우리가 갖출 것은 政治人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바로 全國民이 財團設立者인 全斗煥씨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만 불러서 聽聞會를 한다 했을 때 全國民的 次元에서 이 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素地가 있습니다.

저는 與野委員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日海財團의 文書檢證班長이라는 심부름을 했음이다라는 막상 해 보니까 상당히 難點이 많습니다. 또 民主正義黨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7日 31日이 좋습니다. 또 이 會議은 聽聞會로 하고 장소는 豫決委員會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調査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全斗煥 前大統領에 관한 부분은 일단 20名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梁正模씨인데 全斗煥씨까지 들어가면 20名인가 그렇습니다.

20名을 이틀간에 우리 委員 全體가 訊問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聽聞會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5共特委가 全斗煥 前大統領까지는 證人으로 採擇을 하고 그 出席與否에 대해서는 委員長이나 幹事들에게 委任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國民이 5共特委에 대해서 존경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全斗煥씨까지 같이 證人採擇을 해야 된다고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林春元委員 全的으로 동감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 말씀하세요.

○金 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 炫입니다. 저도 의견이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經濟人들 다섯분 들어간 것은 出捐한 금액에 대한 相異한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出席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全斗煥 前大統領도 5,000萬원을 出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文書檢證班이 가서 찾아도 도저히 어디서 나온 돈인지 銀行出處를 밝힐 수 조차도 없고 法上으로 3年이 지났기 때문에 出處에 대한 것이 燒却이 되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나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日海財團에 出捐한 것에 대한 추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는 별개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全斗煥 前大統領을 이번에 같이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黃炳禹委員 말씀해 주세요.

○黃炳禹委員 제가 처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아닌 것이 진실로 僞裝될 수도 없고 또 사실을 僞裝해서 진실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全斗煥 前大統領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共非理特別委員會에 參席하기 전에 新聞을 보았읍니다만 그 新聞에 金大中總裁께서나 또 金泳三總裁 또 金鍾泌總裁께서 前職大統領인 全斗煥씨 5共非理問題에 대해서 스스로 國民한테 사과를 하고 또 非理가 있다면 자기 財産을 國庫에 환수시키고 이렇게 하면 5共非理는 매듭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新聞에서 보았읍니다.

그 신문이 사실이라면 일일이 事實 하나하나에 前職大統領을 여기에 出席시켜서 證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가 아닌가 합니다.

그 분은 언젠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重福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5共特委에서 많은 사건이 우리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 事件調査를 위해서 30名이라는 特委委員들이 모든 지혜를 짜면서 전력을 投球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우리 幹事會議을 하면서 여러가지 주장이 있었읍니다. 나는 그 幹事會議 사실을 委員長이 여기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여러가지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공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幹事會議를 하는데 있어서 또 내용을 開陳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전에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證人採擇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金科玉條로 말하는 어떤 사건의 진상을 糾明하는 實際的인 진실 발견을 위해서 여러가지 證據方法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풀어가야 하고 일을 에꾸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의 처리에 있어서 늘 順序와 節次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限手段과 節次를 먼저 동원해 보고 그것이 不可能하다면 그 다음에 方法과 節次를 택하는 것이 사리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正道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27日과 31日 20餘名の 證人을 채택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與野幹事間의 協議도 사실상 20名の 證人을 채택함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合意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그 많은 證人들 그분들의 證言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을 豫斷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證據方法이나 節次를 통해서 실체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미 자기가 낸 結論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餘名이나 되는 많은 證人의 證言을 통해서 眞實이 하나 하나 발견되고 실체형성이 되면서 實體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節次를 거치지 아니한채 그저 全斗煥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채택하자 證人採擇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려고 하는 論理를 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자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與野間 幹事間에 合意한 20名の 證言을 한번 聽取해 봅시다. 그분의 證言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분의 證言을 통해서 밝힐 단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어떤 사실에 접근해 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는 실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또 그것이 가장 正當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特委에 있어서는 흥분도 禁物이고 또 豫斷도 모두 禁物입니다.

國民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

리 國會議員이 國民의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國民의 소리를 자기 자의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禁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더 냉정해지고 더 냉후해지면서 이 事件 實體의 眞實發見에 접근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智慧가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與野間에 合意한 것에 대해서 20餘名の 그분들에 대해서 1次的으로 證人採擇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金事旭委員 證人採擇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次로 20人에 대한 證言을 듣고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與黨側에서도 반대 안 한다고 하니가 證人을 採擇하는 것만은 결정해 놓고 다음에 그후에 가서 證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전에 證人採擇이 論難이 되기 이전에 나는 여러분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證人들한테 무엇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文書檢證班에서는 애초에 金東周委員께서 文書檢證班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小委員會調查를 했는데 사실은 調查委員會로 되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檢證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日海에 가가지고 證憑書類를 대조할 길이 없어가지고 封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銀行에 가서 日海에서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해서 調查를 했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미 꼬리는 잡았습니다. 日海에서 진술한 것하고 정반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檢證班들이 새벽 2時 가까이까지 銀行에 가서 그 야단을 했습니다마는 銀行쪽에서 준비가 안 되었으니 내일 午後 5時까지는 필히 資料提出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바로 2시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檢證班長의 얘기는 일곱차례 독촉을 해도 응하지를 않아요. 공공연히 財務部長官이 銀行監督院長을 통해서 적합한 절차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銀行이 預金주의 同意를 얻어오면 응하겠다고 해서 몇 시간동안 위험도 하고 달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잡은 것이 지금 꼬리를 잡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具體的으로 그 내용은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이 여러분이 證人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정말로 협조를 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財務部長官이 銀行監督院長한테 지시를 해서 預金主의 명예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同意를 얻어가지고 하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차 銀行에 갔을때 前法과 後法과의 차이 法律解釋까지 해 주어가면서 몇차례 몇시간을 걸려가면서 지금 文書檢證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資料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聽聞會인지 원지 모르지만 27日 31日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나는 委員長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銀行에 가서 檢證할때 銀行長이 불응을 해서 오죽 담담했으면 委員長한테 연락을 했더니 委員長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日海에서 진술하는 무엇인가 결말을 조금은 잡아 냈는데 지금 의외로 5,000萬원은 全斗煥씨 口座에서 日海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口座의 모든 것을 燒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銀行쪽에서 이렇게 불응하고 있고 그외에 35億에 대한 내역도 엄청나게 큰 어음 쪼가리가 나와서 어음이 몇 쪼가리로 분할되어서 나갔는데 그것도 調査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을 불러서 무엇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려는지 나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이 全體會議에서 文書檢證班이라는 명칭을 빼고 調査班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권한을 주어서 철저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檢證班을 해체하고 31日 全體會議에서 調査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원칙을 정해 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檢證班은 무엇이고 聽聞會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1名이 전부 앉아서 증인들한테 한 말씀을 문질다는 것입니까?

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 우선 關係當局에서 이렇게 증거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고 意識的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해서 무엇을 調査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주시고 檢證班을 그대로 둔다면 나는 檢證班 안해요. 밤잠 안 자고 檢證班이 몇시간씩 가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關係當局 關係銀行에서 협조를 안 해주어서 지금 이래가지고 봉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證憑書類를 對照를 해야 할텐데 檢證班이 무슨 힘이 있어서 對照를 하고 銀行에서 提出 안 한 書類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委員長께 분명히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규칙을 내려 주어야지 특히 檢證班에서 할 것이 뭐다 하면서 檢證班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도 안 해주고 委員長이 現場까지 와서 보았으면서 委員長이 現場에서 요구한 證憑書類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委員長 책임지고 우선 이 문제부터 可決해 주세요.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 말씀해 주세요.

○金 炫委員 金委員님 하고 비슷한 의견으로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 봅시다.

제일 처음에 日海財團에 갔을 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 하다가 우리 委員들의 성화에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文書檢證班이 가서 調査를 할 때 나왔고 했는데 지금 다시 檢證班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정확한 動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檢證班이 投資金融을 갔을 때 처음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일이 잘 추진되는 중간에 앞에 앉아 있던 投資金融代表가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똑같은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預金主의 保護 및 동등의 허락이 없이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서 밤 1時부까지 돌아다니는 동안에 다섯군데가 아주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확실히 저희들이 檢證을 하고 있는거나 國政調査를 하고 있는 것에 어느 특별한 人的 지시에 의한 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委員長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 찾아내어 틀림없이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5共非理가 제대로 밝혀지려면 하나하나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고발을 해주시든 불려다 경고를

주시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이 調查가 정확하게 된다는 뜻에서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朴 實委員 委員長! 결국 證人採擇에 관한 문제하고 效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證人訊問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별개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案件에 대해서는 저는 修正案 비슷한 것을 내가 이야기 하겠어요.

우선 그러면 全斗煥씨를 제외하고 20名을 먼저 채택을 합시다.

채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窮極적으로 全斗煥씨가 여기 안 나오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全斗煥씨 하기로 해서 우선 20名으로 결정하고 단 民正黨에서 그 동안에 檢證班에 대해서 證인들이 出頭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물 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직접 관련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안 왔느냐 했더니 民正黨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왔다. 왜 그러면 한 사람은 나갔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되어서 나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本人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방해는 하지 마시고 20名은 오늘 채택을 하고 나머지 한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필요할 때 가서 하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姜信玉委員 日海財團의 정말 核心的인 사람이 바로 全斗煥씨인데 다른 그 밑에서 일했던 돈됐던 사람들을 調查하면서 가장 중요한 核心的인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형평이나...

○朴 實委員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똑같이 제대로 해요.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姜信玉委員 그래서 제 의견을...

○朴 實委員 말 표현을 정확히 하라고 이거요.

○姜信玉委員 아니 저도 의견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國民들이 지금 全斗煥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5共非理를 빨리 파헤쳐야 된다는 그런 바램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채택해 놓고 全斗煥씨를 뺐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庶民들이 보기에는 납득을 못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바로 27日 證言 調查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번 證人을 채택할 때에는 가장 核心的인 사람 全斗煥씨도 포함해서 채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全斗煥씨에 대한 訊問自體는 27日이나 31日이 아니라도 좋고 추후 지정을 해서 적어도 장래 訊問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國民한테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證人採擇에서는 적어도 大統領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채택은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訊問期日은 적어도 大統領은 추후에 한다 이런 정도로라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내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徐廷華委員 이번에 定期國會 國政監査를 16年만에 처음 우리가 하면서 言論이나 기타 國民視角에서 보면은 각 常任委員會가 事實上 5共特委 저회 委員會가 해야 될 일들을 각 常任委員會에서 맡아서 추진해온 그런 형태로 비치고 있습니다.

事實上 저회 特委가 4個月동안 구성되어 가지고 4個月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저회 特委가 여러가지 일은 했다고 봅니다.

現場踏査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文書檢證班活動이라든가 여러가지 活動을 했습니다.

물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해서 國民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위해서 진실과악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定期國會 國政監査를 통해서 國民이나 또는 輿論이 보는 측면에서는 5共特委活動이 시원치않게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런 면을 저회는 확실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저회 與黨이 잘못하고 野黨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與黨이 잘하고 또 野黨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간에 상당히 운용하면서 의견의 異見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新聞紙上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證人採擇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는 野黨에서 證人採擇範圍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저

회 黨의 의견도 있습니다.

委員長께 제가 특별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委員會가 與野 공히 尖銳化되어 있고 그저 누구는 감싸고 누구는 뒤집고 또 누구는 監査에 응하지 않고 保護하려고 드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國民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本委員의 임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발 이 결정을 하는데는 一方的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과연 納得이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委員會가 效率的으로 運營될 것을 제가 그 동안에 느낀점을 委員長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證人採擇問題에 있어서 全斗煥 前大統領부분에 대해서 異見이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言論이나 新聞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各黨의 생각이 어떤지는 나름대로 판단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委員長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日海財團을 요번에 조사를 하고 解體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그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림 證人採擇을 하자하는 문제도... 여하튼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 건에 대해서 또 國政監査에서 거론됐던 몇 건에 대해서 國政監査에서 證人採擇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또 가면 證人이 출석하면 저희 委員會活動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저희 委員會 權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번에는 20名の 證人을 採擇해서 進行을 하고 그리고 또 몇가지 중요한 案件에 대해서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證言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書類系統을 통해서 한다든가 우리 委員會가 效果的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全前大統領 證人採擇問題를 여기서 더이상 意見은 開陳하지마는 그러나 다같이 또는 저희 特委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국민이나 언론이나 보는 측면에서 서둘러서 지금 꼭 證人採擇을 해야 될 深刻性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든지 있고 본인이 또 어디에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못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20名에 대해서 證言聽取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필요하다면 다른 事件도 다루어 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適法節次를 통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金瑛鎬委員 證人採擇問題에 있어서 제 입장과 우리 平民黨幹事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幹事會議에서 양해가 되었던 事項은 여러가지 異論이 나와 있습니다. 民主黨에서는 前 全斗煥大統領을 27日 31日 19名이 되었든지 20名이 되었든지 정확한 數字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불러가지고 證言聽取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主張을 했습니다. 平民黨幹事인 저는 全斗煥씨를 20名에다가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聽問을 하든지 質疑應答을 하든지 質問하는 것은 非效率的이고 生産的인 이 事案을 밀도있게 探索하고 調查하는 데는 非效率的이다 최소한도 全斗煥씨 혼자만 가지고라도 어느 경우에는 하루이틀이 걸릴 것이다 그렇더라도 27日 30日 한 「페케이지」로 묶어 가지고 하면 어쩌냐 하는 意思表示를 분명하게 했고 필요하다면은 全斗煥씨를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採擇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27日과 31日에 불충분하고 어차피 5共非理에서 延禧洞집이 되었든지 經濟非理가 되었든지 人權非理가 되었든지 여러가지를 대충 基礎的인 것을 調查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을 수도 있는 그런 契機도 된다 그때가서 부르는 것도 제 생각으로서는 生産的인 입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어 가지고 일응은 27日 31日은 全斗煥씨를 제외를 한 나머지는 合意되었었고 양해되었던 20名을 부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委員들이 發言하고 異議를 다는 것은 各自 獨立된 憲法機關이기 때문에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政黨의 所屬委

員들의 의사를 대신해 가지고 합의했던 事項을 幹事가 이 分野에 대해서 異論을 제기한다는 것은 政治信義問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白紙化해 가지고 다시 舉論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委員長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의사제진하라고 그런다면 平民黨 幹事인 本委員은 全斗煥씨를 이번에 한데 묶어 가지고 證人採擇하는데 全幅의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 이 分野의 처리에 대해서는 委員長의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姜信玉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幹事會議에서 그 이전에 金重權委員께서 왜 委員長이 幹事會議에서 오고간 얘기를 이 本會議에서 소개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어린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이 姜信玉委員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돼서 똑떨어진 우리 幹事會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었읍니다마는 많은 同僚委員들이 幹事會議를 지켜보면서 거의 다 들었던 사실입니다.

秘密會議가 아닌 거의 公開會議에 가까운 그런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參席하지 못한 委員들도 참고로 하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얘기에 대하여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秘密이 되는 것입니까? 또는 會議에 보탬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라면 幹事會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幹事會議狀況이 상당히 복잡했읍니다. 그래서 아마 姜信玉委員은 民主黨을 대신해서 처음에는 함께 포함해서 全씨를 參席시키자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會議의 對話內容이 바뀌어 가면서는 거의 그 發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瑋鎭委員 얘기는 그 당시에 양해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때에 아주 중요한 事項같아서 姜委員이 그 당시 幹事會議에 계시면서 全씨의 出席部分에 대한 분위기를 어

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전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信玉委員 저는 幹事會議 막판에 결국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金重權幹事가 그것을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金瑋鎭委員이 다음에 불러도 좋다는 뜻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會議에 무슨 合意가 도달하지 못한채 本會議에 들어온 겁니다.

결국 거기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온 事項이지 합의가 다 됐으면 여기서 다시 말할 여지가 없지요. 적어도 全斗煥씨 出席問題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합의가 다 됐는데 얘기하다가 本會議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상태지...

○金瑋鎭委員 委員長! 委員長께 하나 묻겠습니다.

幹事會議에서 全斗煥씨 出席問題를 委員長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作心을 하시고 나오셨는지 그런 것을 먼저 묻고 싶고 우리 平民黨 입장은 그렇습니다. 全斗煥씨를 證人採擇하라 하는 것까지는 저희는 찬성입니다. 분명히 밝혀졌읍니다. 그러나 27日과 31日 出席시키는 것은 反對입니다. 그 이유는 生産的이고 效率的인 證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契機가 절대로 物理的으로는 不可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平民黨의 公式的인 입장은 분명히 밝혀졌읍니다. 오늘 이 시간에 全斗煥씨를 日海財團의 非理를 調查하기 위한 證人으로 採擇할 것을 저는 절대로 同意를 하겠읍니다.

아까 幹事會議에서 委員長은 우리 4黨 幹事 얘기 주고받는 狀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심을 하시고 나오셨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만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昇衡委員 지금까지 쪽 듣고 있는데 확연히 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4黨 幹事會議에서 결정된 事項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확연히 한 연후에 4黨 幹事會議 內容을 이 全體會議에서 通過시키고 그 다음에 그 幹事會議밖의 문제는 이 다음에 討論하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두 委員의 물음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좀 하고 그 다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趙委員님께서 물어주신 어제 4黨幹事會議는 言論에도 많이 비취었습니다마는 梁正模씨하고 쏘씨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序頭에서도 제가 잠깐 報告를 드렸읍니다마는 野黨幹事들은 두 분이 다 出席해야 된다 하고 與黨에서는 反對를 하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어제 幹事會議 해어지면서 오늘 全體會議에서 그 부분을 幹事들이 조금 일찍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합시다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오늘 全體會議가 시작되기 전에 幹事會議 비슷하게 했읍니다. 했는데 역시 주장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했읍니다.

金瑋鎬委員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委員長의 생각은 무엇이나 무엇을 결심하고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委員長은 너무 이것이 政治的인 發言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의사에 따르고 會議를 이렇게 끌고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證言聽取問題도 再監도 아까 幹事會議에서 이것이 분위기상 확연하게 똑 떨어지게 뭐가 안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事案의 重要性에 비추어서 여기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幹事會議의 내용 분위기를 설명 말씀을 드렸던 것 외에 다른 아무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할 것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쏘씨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또 다른 委員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개인의 소신을 얘기하라 하면 쏘씨는 日海財團에 가장 核心的인 인물임이 틀림없읍니다. 나중에 調査를 해서 안 그렇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출석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委員會에 부하된 많은 事案中에 이 분이 해당되는 것이 원체 많거든요. 많으니까 몇 가지 앞으로 調査를 해 나가다가 몇 가지 事案을 우리가 보태서 하느냐 그것

은 상당히 技術的인 문제입니다.

또 平民黨의 金瑋鎬委員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日海財團問題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더라도 그 사람 한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20人 以外 한사람 선택해서 質問을 하더라도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는데 굳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異見도 저는 볼 때 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金斗煥 前大統領이 5共特委에 나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나올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委員長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제 各黨의 견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있는데 이것은 오늘 나는 決定을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27日 31日까지 날짜도 있고 하니까 未決로 이렇게 우리 幹事들끼리 안그러면 우리 全體委員들끼리 계속 문제로 좀 留保를 해 두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人에 대해서만 오늘 決定을 하고 決議를 보고 이것은 또 留保해서 앞으로 幹事會議와 全體會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論議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趙昇衡委員 그러면 어제 했던 幹事會議는 무효로 돌린다 그런 말씀입니까?

○委員長 李基澤 출석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幹事會議에서 決定된 것이 없습니다. 20人과 오늘 各黨에서 몇 분들 더 추가한 그 분들 그래서 「토탈」 20人에 대해서는 어제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어제 合意를 보지 못했던 梁正模씨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20人에 포함이 되고 이 쏘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合意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로 우리가 論議를 해 나간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辛再基委員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許萬基委員 委員長! 한 말씀 해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우리 枝葉末端的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論難을 해봤자 아무런 生産的인 결론은 안나고 우리가 會議를 이런 식으로 운

영하는 것은 저는 너무 非能率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全斗煥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채택을 해놓고 다음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證人으로 나오게 하느냐 어찌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長께서 가장 무난하고 적당한 提案을 대단히 또 신중한 提案을 한 것 같어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적당한 提案을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經科委員會만 해도 國政監査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결론을 냅시다.

그것은 委員長께서 적절한 決定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辛再基委員 이제 許萬基委員님께서 말한 내용은 짐작이 간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特別委員會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幹事會議 事前に 協議를 하고 어떤 決定을 보고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어제 幹事會議에서 상당한 진척이라든가 어떤 決定이 있어 가지고 오늘 그것을 서로 合意하는 決定을 보는 이런 會議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原點으로 돌아가서 討議가 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제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사항을 오늘 決定을 보고 나머지 문제는 아까 委員長님 말씀하신대로 각 委員들께서 考慮問題로...

○趙昇衡委員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辛再基委員 똑같은 것이 아니죠.

여기에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梁正模씨는 오늘 추가로 된다고 그러는 데 그것 合意된대로 놔두자 이것입니다. 梁正模...

○委員長 李基澤 어제 合意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좀 아시면서 해야지...

○辛再基委員 아까 委員長이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오늘 合意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幹事會議를 좀더 충실히 하시고 幹事會議에서 決定

된 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會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昇衡委員 제가 어제 合意한 사람들중에서 間接證人이 하나 있네요. 누구냐하면 外務次官 申東元 이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次官을 찾아서 證人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間接證人 들 어와야 소용이 없거든요.

○金東周委員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日海財團設立 自體를 무슨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監督官廳이 外務部인데 원칙은 外務部長官을 불러야 되는데 UN總會에 가기 때문에 현재 外務部에서는 日海財團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監督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현재가 맞지 않습니까?

○徐廷謙委員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본뜻은 證人으로 採擇해서 부르는 본뜻은 내가 누구 特定人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뜻은 지금 金委員이 얘기하고 많은 우리 委員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善意의 뜻으로 確認하려고 그러나 안그러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罪人으로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동안의 證人에 대한 一般的인 法律的 概念은 분명히 그런 참고로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言論이나 그동안의 쪽 흐름으로 봐 가지고 證人으로 特委에 나왔다고 어디 한번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그 社會에서 그 組織에서 罪人親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證人採擇을 할때 정말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原則的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證人이 이 席上에 나와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어느 組織이나 또는 國民이 보는 시각에서는 너 잘못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상당한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證人採擇을 하는데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제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자 이렇게 앞에 열거했던 20名에 대해서는 다시 부를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부르세요」하는 이 있음)

金甲基 林正煥 朴魯洸 임종보 金麟培 金基

桓 趙成熙 安賢泰 張世東 金圭錫 李鍾元 任昭麟 崔淳達 鄭周永 梁正模 李竣鎔 崔淳永 柳纘佑 張致赫 申東元 이렇게 20名입니다.

앞으로 本 特委에 출석시킬 것을 여러 委員들께서 異議가 없으면 正식으로 可決하고 金斗煥씨에 대해서는 그 出席과 時期를 앞으로 幹事會議과 우리 全體會議에서 論議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고 決定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異議없으시죠?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可決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會議가 다 돼 갑니다. 이 證言聽取會議方式에 대해서 우리 本會議에서 協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證言聽取를 위한 會議方式은 國會法 第61條에 의한 證言聽取를 위한 聽聞會를 開催하여 證言을 듣는 方法이 있고 聽聞會 아닌 一般會議形式으로 듣는 方法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 聽聞會를 開催하는 경우에는 聽聞會가 委員會會議로 되면 聽聞會開催公告 이 聽聞會는 聽聞會를 하게 되면 國會의 揭示板에다가 聽聞會를 한다고 聽聞會開催日 5日前에 아마 이 公告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常委에서 一般會議에서 證言聽取하는 것하고 형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公告를 해서 알리는 效果가 있고 改正國會法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 聽聞會制度가 처음으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 5共特委같으면 어떻게 보면 13代 國會의 縮小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共特委에서 또 日海財團이라고 하면 5共和國 그 非理의 縮小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事件을 한번 다루는데 이 聽聞會形式을 채택하는 것도 상당한 意義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어제 幹事會議에서는 이 聽聞會形式을 한번 취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異議가 없으시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證言聽取會議場所로 지금 當 特別委員會에서 쓰고 있는 이 會議室은 證言聽取에 너무 좁아서 불편하므로 議事堂 1層에 있는 豫決委 會議室인 145號室을 그 場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委員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諒解事項으로 넘어가고 끝으로 20人的 證人에 대한 證人出席要求書의 發送 證人別 訊問要旨와 訊問順序 기타 證言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細部事項은 委員長과 미안하지만 幹事會議에 一任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聽聞會開催에 따르는 여러가지 후속절차같은 것 이것은 우리 全體會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幹事會議에 委任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會議가...

○姜信玉委員 아까 幹事會議하다 마지막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聽聞會를 開催하기 위해서는 書類檢證調查班이 하고 있는 調查가 상당한 정도의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 前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調查班이 調查를 하면서 調查를 協調해 줘야 될 財務部長官이나 무슨 銀行같은 데에서 協調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치 書類檢證만 委任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檢證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그냥 돌아와야 되고 하는 이런 고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調查檢證班에 적어도 財務部長官이 그런 방해를 한다고 하면 불리해서 檢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證人으로도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調查班의 權限을... 뭐랄까 事務 볼 수 있는 權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까지 檢證班이라고 했다 하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든지 이러지 않는 범위내에서 調查班의 活動을 強化할 수 있는 그런 權限을 부여해 주기를 勸議합니다.

○張慶亨委員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幹事會議席上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대충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왕왕 뭘 잘 못해 가면 節次法때문에 항상 是是非非가 일게 마련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文書檢證班이 檢證을 좀 하는데 財務部長官이나 財務部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金融實名法이라든지 이 關係의 條項을 들어가지고 지금 通帳의 所有主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節次關係를 지금 論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文書檢證

班에다 무슨 包括的인 權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잘못해 놓으면 財務部長官이 그 關係法에 의해서 說明을 하는데 證人으로 채택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 國會의 權威나 우리 5共特委의 權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折衷案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 金瑋鎬委員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에 우리 5共特委안에는 특히 財務委員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5共特委 委員長의 이름의 要請에 의해서 財務委員會의 委員長과 또 財務部長官에게 直接 公式的인 우리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바로 文書檢證班이 要求하고 있는 資料를 財務委員會를 통해서 언제까지 꼭 받도록 하는 우리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애기지 그 사람이 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說明을 하고 節次法을 하는데 證人으로 財務部長官을 文書檢證班에 내세운다는 자체도 우리 證人採擇方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折衷案을 委員長께 提示를 하는 것입니다.

○金瑋鎬委員 姜信玉 民主黨委員의 發言에 全幅的으로 지지를 표하면서 折衷案으로 이렇게 全體會議에서 決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第1小委員會가 全세 一家族의 非理와 이에 대한 事項을 調查할 수 있도록 全體會議에서 確定을 지었읍니다.

그러면서 調查對象을 全體會議에서 各 小委員會에다가 넘겨주는 委任하는 식으로 지금 特委가 運營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順子씨가 關여된 것을 國會法에 의해서 第1小委員會에서 調查하도록 委任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金東周委員이 第1小委員長입니다. 그러니 日海財團非理問題를 第1小委員會에다가 넘겨 줍시다.

그래가지고 檢證班하고 第1小委員들하고 合同으로 해서 國會法에 의한 調查權을 가지고 調查할 수 있도록 이렇게 全體會議에서 第1小委員會로 넘겨 주면 보다 더 密度있는 深度있는 調查가 되리라는 이런 생각에서 全體會議에서 決議할 수 있도록 이렇게 確定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重權委員 저도 修正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第1小委員會가 政治權力型非理調查를 하

기 때문에 아까 金委員님 말씀처럼 그 原則에는 動議합니다.

그런데 文書檢證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또 第1小委員會를 두고 하게 되면 하나의 사실을 發見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중첩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第1小委員會에다가 全權을 전부 주어서 證人을 採擇하든 書類提出을 要求하든 文書檢證을 하든 한 쪽으로 統一하는 것이 眞實發見에 效率的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可能하다고 하면 이런 事件들을 1小委員會에 넘겨 주면서 모든 權限을 거기에 주고 그렇게 運營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瑋鎬委員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第1小委員會에다가 넘겨 주면서 調查할 事項이 繼續的이기 때문에 지난번 檢證班에서 수고했던 檢證班員들하고 第1小委에 屬해 있던 同僚委員들하고 이렇게 合同으로 調查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諒解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애기올시다.

○金重權委員 앞으로 2小委, 3小委, 4小委도 稼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金瑋鎬委員 앞으로 이중삼중으로 어차피 뭐게 마련입니다.

한 「패키지」로 調查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면한 日海財團非理問題는 계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小委員會에다가 한꺼번에 넘겨 버리고 書類檢證班은 손을 댄다는 애기는 深度있게 調查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오리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1小委員會에다가 國會法에 의한 調查權을 다 넘겨준과 동시에 檢證班員들과 合同으로 調查하도록 이렇게 이 事項만을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데서 本委員의 애기올시다.

○盧武鉉委員 다시 修正意見인데요 第1小委하고 檢證班이 같이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檢證班중에 第1小委所屬委員님들이 계실 것이고 다른 小委委員님들도 계실 것인데 함께 모아 놓으면 黨 議席比率에 따른 比率이 자칫하면 깨질 可能性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第1小委員會에 전부 넘겨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業務의 繼續性維持라는 것은 平民黨幹事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各黨에서 小委部分을 교체를 하면 繼續性도 維持되고 1小委에서 統一된 業務도 될 수 있는 것같은데……

○委員長 李基澤 어떻습니까? 그 方法이 좋은 것같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지금 日海調査에 文書檢證을 中心으로 한 모든 調査活動이 그러니까 全體會議이 있기 이전까지 즉 27日 이전까지의 日海의 調査活動을 第1小委에 委任키로 하고 그 第1小委를 구성하고 있는 各黨의 委員數의 變更은 없이 委員의 變更을 各黨事情에 맡겨버리면 支障이 없을 것 같습니다.

○金 炫委員 지금 1小委 委員들을 보면 委員長 한 분만 檢證班과 1小委에 중복되어 있지 제가 보기에는 統一民主黨은 檢證班하고 1小委하고 안되어 있고 저희 共和黨도 안되어 있고 平和民主黨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結果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物證을 넘겨 드리기는 쉬운데 지금까지 쪽해왔던 心證을 넘겨드리는 데는 상당히 問題性이 있지 않느냐……

○金 奉相委員 여러분들 지금 이것 원래 文書檢證班이 小委員會에서 해야 할 것을 各黨委員들을 薦擧해서 자기가 맡은 小委의 책임이 외의 部分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經濟非理에 主力을 하고 있고 日海하고 겹해서 겹치게 되었는데 자체에 檢證班을 解體하고 전부 1小委가 가져 가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었다고 調査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調査했던 物證은 여러분들한테 현재까지 꼬리를 잡은 부분은 넘겨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꼬리를 놓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고 아예 차계에 檢證班을 解體를 하고 1小委에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金東周委員 제가 參考삼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現在 이달 27日 31日 聽聞會라는 것을 진짜 5共特委 全體와 大韓民國 國會 全體의 權威를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제가 빠질 수 있는 方法이 있으면 빠졌지 사실 檢證班에 와서 고생한 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 잘 하시겠지만 상당히 組織적으로 研究를 무척 했습니다.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 여기에

서 어떤 사람이 바뀐다 어떤다 된다 하면 지금 현재 곧 聽聞會는 열어 놓고 이상한 方向으로 또 節次是非니 뭐니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與野간에 日海財團을 명확히 調査하는데 事實을 事實대로 밝히는데 目的이 있다면 방금 姜幹事께서 얘기한 것이 저야 第1小委員長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 權限을 주세요. 주면 이 「멤버」들이 빨리 正確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能率的이 아니겠습니까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銀行에 가서 그 이튿날 5시까지 내 놓겠다는 文書가 韓國投資金融株式會社하고 韓一銀行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國會專門委員이나 本人을 통해 가지고 일곱차례 電話通話한 時間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檢證班에 그런것을 안 주겠다고 딱 한 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財務部長官과 國務總理를 出席시켜서 檢證班에서 내 놓으라는 것에 대해서 調査를 방해한데 대해서 여기에서 證言을 聽取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命命을 해서 銀行에서 資料가 나오도록 措置를 취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擇하세요.

○盧慶亨委員 結論적으로 저는 盧武鉉委員의 修正動議에 대해서 贊成을 하면서 지금 金東周委員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節次法이 어머니 論難을 거듭했던 것도 바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1小委에 일단 모든 것을 넘겨 놓으면 1小委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檢證에 妨害되었으면 證人採擇도 되고 모든 것이 包括的인 監査와 調査의 權限을 갖고 있는 小委員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小委員會에 모든 것을 委任하되 아까 말씀하신 繼續性原則에 의해서 그 小委員會에 各黨에서 文書檢證班에 參與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27日이면 聽聞會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各黨에서 알아서 그 1小委에다가 文書檢證에 派遣되었던 분들을 1小委에 派遣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小委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던 특별히 檢證班에다 어떤 權限을 附與할 필요없이 包括的인 檢査班의 役割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結論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제 提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意見이 合理的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活動을 해 온 과정의 繼續性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 意見은 그런 뜻에서 撤回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小委가 4個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도 小委活動이 된 일도 없고 業務도 부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第1小委에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檢證班을 하나의 特別小委員會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權限을 文書檢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文書의 相互關聯關係라든지 文書의 素材 文書を 내놓지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訊問을 할 수 있는 權限을 확장하는 것이 지극히 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撤回을 하겠습니다.

○金 炫委員 文書檢證班에 있던 저로서 다시 한번 정확한 얘기를 드려 봅니다. 지금 1小委에다가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어느 委員중에 어느 분이 더 나아서 저희들 共和黨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 小委員會가 하나도 活動되지 않았던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小委員長 한분만 文書檢證班하고 걸치지 나머지는 걸치지 않습니다.

共和黨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내가 檢證班에 갔었으니까 1小委를 내가 할게요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調查해왔던 것은 物證을 金委員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아서 들어가는 범위고 가장 중요한 것은 調查에 방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姜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더 調查할 수 있는 權限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어느 특별한 무엇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文書檢證班에 조금 더 權限만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調查할 때

방해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만 協調를 해 달라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徐廷華委員 지금 아주 좋은 意見이 나오다가 또 原點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가지 意見이 있는데 오늘 幹事會議에서 合意한 事項가지고 證人까지 採擇했으니까 이 會議가 끝나고 幹事會議를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時間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趙昇衡委員 지금 檢證班에 權限을 준다 小委員會에다가 넘긴다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全體會議를 두고 또 小委員會를 둔 目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4個나 되는 그 많은 事件들을 각 小委員會에 分配를 해주어서 각 小委員會別로 거기에 맞는 事件들을 調查를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5共 非理事件의 한 件에 매달려 가지고 2個月 3個月이 걸립니다. 이래가지고는 10년이 되어도 調查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根本問題로서 全體會議는 小委員會에 各各 거기에 해당되는 事件들을 配當을 해주고 각 小委員會에서 맡은 事件들을 責任下에 調查를 하고 結論을 낼 部分에 가서는 그때 가서 全體會議에서 結論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運營方針을 가지고 運營을 해야 이 5共特委가 공정하고도 자세하고 또 迅速하게 處理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5共特委初에 이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목살이 되고 運營이 안 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지금 小委員會에다가 넘긴다 뭐 檢證班에다가 넘긴다 이러는데 제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檢證班은 뭐 넘기고 할 것 없어요 왜 證言을 듣습니까?

證言 들을 必要없이 提出要求를 했는데 거기에 不應했으니까 國會法에 따라서 告發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告發한 事件이 한 件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提出要求에 不應하는 사람들이 붙어납니다. 一罰百戒의 警告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 告發해야 합니다.

그러면 自動的으로 解決될 것이요. 그러나 告發이 能事가 아닙니다 告發이 能事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告發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告發과 똑같은 效果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아마 姜信玉委員님께서 提案한대로 檢證班에다가 일정한 權限을 委任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方案은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檢證班 解體하는 것입니다

쓸데 없는 檢證班을 뭐 하려고 둘니까?

○委員長 李基澤 마지막 대목은 省略합니다.

省略하고 速記錄에서도 빼고...

○趙昇衡委員 아니에요 速記錄에 넣어요.

○委員長 李基澤 또 整理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第1小委員會에 日海財團調查를 한번 맡겨 보자 그런데 永續性에 缺陷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既 있는 文書檢證班에 그 檢證班이 小委 못지 않은 活動을 할 수 있는 權限을 한번 附與해 보자 이 두가지입니다.

사실 第1小委에 지금 調查를 맡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文書檢證을 해 오시는 委員들이 第1小委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調查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그런 判斷이 들고 그래서 文書檢證班에 어떤 權限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專門委員 보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요. 日海財團文書檢證班에서 金融機關 文書檢證 調查活動에 필요한 경우에 財務部長官 등의 報告를 檢證班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도록 全體會議에서 權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가해서 財務部長官의 報告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銀行監督院長도 檢證班에서 불러서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書類提出要求權 報告要求權 이런 것을 檢證班에다 權限을 더 주면 調查에 지금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않을 것 아니냐 이것이.....

○姜信玉委員 지금 말이죠. 檢證班이 檢證을 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檢證을 못하고 있다 하는 고충을 얘기하기 때문에 檢證班이 적어도 檢證을 방해 받을 때에는 예를 들면 김인배를 證人으로 신청해가지고 왜 그랬느냐 따질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檢證班의 이름

을 檢證을 필요로 하는 어떤 調查班으로 승격을 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주면 간단한데 29일까지... 그것입니다.

그것만 해달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또 다시 調查하고 尙斗煥을 부르고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檢證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도 檢證班이라는 명칭 때문에 당신들은 證人을 採擇할 수도 없고 당신들은 宣誓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시 요청을 할테니까 第1小委員長이 공교롭게도 文書檢證班長까지 兼해 왔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日海財團을 文書를 중심으로 해서 또 日海財團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다음에 各黨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論議합니다.

○金東圭委員 제가 얘기를 하지요.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압축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가 市中銀行에 갔을 때 銀行長들이 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을 내세워서 預金主의 同意없이 手乘追跡을 資料를 못 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財務部 監査때 물어 봤더니 財務部長官의 적법한 절차를 밝아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주라고 監督院長한테 지시를 했고 監督院長은 市中銀行長한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에 부딪힌 것이 이것을 해결하자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證人採擇은 이미 여기서 合意되어서 20名 다 했고 거기서 다른 證人을 부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全體會議에서 그 동안에 文書檢證班이라는 것이 하도 字句解釋때문에 是非가 생겼으니 명칭을 調查檢證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적하는 銀行關係資料만 聽聞會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부하는 놈은 불러다 따질 수도 있게 이 정도의 權限을 못 주겠

느냐 이 얘기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金東周委員** 저희들 아까 우리 檢證班하고 議論을 모았는데 사실 이 이상 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왜냐 하면은 물론 같이 與黨도 처음에 다녀봤지만 엄청나게 妨害工作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國會法에 보면 特委에서 또 常任委員會에서는 小委員會도 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班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不實企業까지 정리를 할려면은 110個요 우리가 調查事件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班도 만들어야 됩니다.

委員會內에서 안 되는 것은 2名 3名 잘라 班을 만들어야만이 모든 調查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權限을 주었느니 뺐었느니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때문에 國會에서 建議를 해서 열심히 調查시킬려면 아까 金東圭委員이나 姜信玉委員께서 말씀하신 國會法에 따른 하나의 文書檢證調查團을 日海財團調查班으로 昇格을 시키든지 이렇게해서 國會法에 있는 權限을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文書檢證班을 變形發展시켜서 日海에 관한 非理調查班 아니면 調查小委員會, 그래, 調查班됐지요 異議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國會法에 부여된 權利를 權限을 이 調查班에 드리도록하고...

○**金重權委員** 日海調查에 대해서 全體特委가 가동되면서 調查를 하고 있습니다.

더 더구나 27日과 31日에 證人을 20名씩이나 지금 採擇해서 證言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調查班이 말입니다. 앞으로 調查活動함에 있어서는 全體 特委가 活動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全體 特委에서 採擇한 證人을 調查班에서도 부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眞實發見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짚어두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것은 良識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것을 못박을 것은 없지않습니까?

良識도 되고 분명하게도 되는 것 두가지 다같이 하기로 하고 결정된 것을 宣布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仁 泳	金 重 權
朴 進 球	徐 廷 華	辛 再 基
安 秉 珪	張 慶 宇	趙 庚 穆
黃 昞 禹	黃 潤 鎰	金 奉 旭
金 璋 鎬	朴 實	孫 周 恒
林 春 元	趙 昇 衡	許 萬 基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崔 戊 龍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宋 寶 圭

【**報告事項**】

○**特別委員會召集要求의件**

10月10日 金重權委員外 12人으로부터 日海財團設立背景및資金調查에관한件으로 10月13日 午後 2時 特別委員會 召集을 要求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權力型非理調查特別	李 相 得	趙 庚 穆	民主正義黨
	李 承 潤	李 致 浩	"
	李 應 善	黃 昞 禹	"

(10月13日字)